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05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국내여행지원금 소득공제 신설(임광현의원안)	2

I. 개요

1.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0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임광현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7. 19.
- (3) 회 부 일 : 2024. 7.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들이 선택적 복지 제공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여행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여행지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위축되고 있는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행지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숙박·교통 비용에 대한 국내여행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연 2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4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내여행지원금 소득공제 신설(임광현의원안)

현 행	임광현의원안
☐ <신 설>	☐ 국내여행지원금 소득공제 신설(안 제99조의14 신설) ○ 공제대상: - 근로소득자가 사용자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여행지원금 * 숙박·교통 비용 지원금만 해당 ○ 공제한도: 연 20만원

* 임광현의원안 2024. 7. 19. 제출(의안번호 2005)

☐ 개정안은 국내여행지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용자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국내여행지원금(숙박·교통 비용 지원금만 해당)에 대해 연 2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 2023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휴가기간 중 가장 많이 한 여가활동 유형은 ‘관광활동’(77.3%)으로, 성별·연령·소득에 상관없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휴가 중 여가활동 유형]

(단위: %)

항목	비중	항목	비중
관광활동	77.3	스포츠 참여활동	10.5
취미오락 활동	46.7	문화예술 관람활동	9.9
휴식활동	26.8	문화예술 참여활동	3.7
사회 및 기타활동	21.4	스포츠 관람활동	3.0

주: 복수응답 가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국민여가활동조사 통계보고서”, 2024

□ 개정안은 최근 기업의 복지제도로 활용되고 있는 여행지원금 중 국내여행을 위한 숙박 및 교통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경기침체 및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위축된 국내 관광산업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출국인원은 2,681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1%가 증가한 반면¹⁾, “2024 국민여행조사 1분기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국내여행 횟수는 7,258만회로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23년도 1인당 연간 평균 국내여행 지출액은 82만 4,000원으로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COVID-19 유행 이전 수준은 아직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1인당 연간 평균 국내여행 지출액]

(단위: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인당 연간 평균 국내여행 지출액 *만 15세 이상	959,000	976,000	530,000	567,000	756,000	824,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2018년~2023년)

한편, 국내여행객들의 항목별 지출액 구성을 살펴보면 여행중에 음식점, 교통비, 숙박비, 쇼핑비 등 다양한 종류의 지출이 이루어지게

□ 1)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

되므로 국내여행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국내 관광여행 시 여행지 구매 항목별 지출 비중]

(단위: %)

구분	음식점비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	여행 활동비	쇼핑비	여행사 상품 구입비	회비
비중	37.0	23.0	15.4	8.3	4.9	4.2	4.1	3.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3 국민여행조사”, 2024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공제대상인 국내여행지원금을 명확히 정의·분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임.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행지원금 전체가 아닌 지원금 중 국내 여행을 위한 숙박·교통 비용 지원금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가 지급하는 여행지원금 중 교통과 숙박을 위해 지원한 금액의 비중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휴가비 명목으로 지급한 여행지원금의 실제 지출 여부 및 세부항목을 파악함에 있어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정확한 공제액 산정 및 국내 여행 활성화 등 입법취지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소득공제의 혜택이 근로소득이 높은 근로자에게 편중될 수 있음.

개정안에 따른 소득공제의 혜택은 주로 임직원에게 여행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 등 일부에게만 돌아가고, 여행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근로자와 2022년 귀속 소득 기준 33.6%에 달하는 면세자는 공제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또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특례를 부여함에 따라 개인사업자 등 사업소득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셋째,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이미 근로자의 국내여행 지원을 위한 재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세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